



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(왕십리뉴타운제2구역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56(2004.5.31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32(2005. 8. 4)호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(세부개발) 계획 결정되었으며, 2006. 5. 18 조합설립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6-39(2006. 6. 29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8-47(2008. 08. 21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신청이 있어

2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류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규정 등에 적합하여, 같은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명칭: 왕십리뉴타운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시행구역: 성동구 상왕십리동 12-37번지 일대

다. 면 적: 68,951.10m²

라. 사업시행자: 왕십리뉴타운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김자성

마. 주된 사무소: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몰 221동 2층 140호

바. 주요변경 내용

-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및 아파트 규모별 대지지분 변경
-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 변경 및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종전 토지 및 건축물
- 일반분양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격 및 총 추산액 변경
-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변경 및 이에 따른 비례율 변경

사. 행정사항

-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내용을 구보에 고시
-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 교부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내용을 통지토록 안내

- 붙임 1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검토보고서 1부.
2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(안) 1부.
3.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서 1부. 끝.

지방시설주사 **김국환** 재개발1팀장 **조영두** 주거정비과장 **소순면** 도시관리국장 12/29
관공공

협조자

시행 주거정비과-8168 () 접수 ()

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<http://www.sd.go.kr>
전화 02-2286-6564 / 전송 02-2286-6916 / kimkw1@sd.go.kr / 대시민공개
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!